

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안전한 대한민국!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자재관리센터장
(경유)

제목 비상자재 운용 규정 정비 추진계획 제출

1. 관련근거

가. 재난업무처리규정 제30조(재난복구용 장비 및 비상자재의 확보) 제4항

나. 자재관리센터-4336('17.11.3.) 『비상자재 출고방법 일원화 알림 및 비상자재 운용 규정 정비 요청』

다. 안전계획처-4713('17.11.6.) 『철도안전관리체계(공사사규 포함)변경 시 절차이행 알림 및 변경 신청 제출요청』

2. 위와 관련,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및 검사 시행 지침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 절차 이행 이후 전자분야 비상자재 운용 관련 사규 정비 및 변경을 추진 할 예정으로, 이에 따른 사규정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가. 전자분야 비상자재 운용관련 사규개정(안)

- 비상자재 품명, 규격, 단위, 보관수량, 배치기준 등을 명시
- 비상자재 사용이력 현황 관리방법 명시
- 비상자재 점검주기 및 점검(육안, 동작)방법 명시

나. 사규정비 추진계획

사규명	재개정 완료(예정)일	비고
전자설비유지보수규정 및 시행내규	2018년 상반기	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절차 이행 후 추진

끝.

전자처장장

과장 임유신

부장 윤주길

처장 11/21
송재찬

협조자

시행 전자처-3252 (2017.11.21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-48(용답동)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860 전송 02-6311-4379 / yslim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